

지방교육재정(편)

교육재정콜로키엄

송기창교수님과 함께 하는

# 교육재정 콜로키엄

교육재정의 올바른 이해와 발전을 위해 교육재정의 기본 개념부터 교육재정의 현황 등을 정리하여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교육재정전문가이신 송기창 교수님을 모셔서 콜로키엄을 개최합니다.

**주제 : 교육재정이란 무엇인가?**

**강사 : 송기창(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강원대학교 교육재정중점연구소 석좌연구위원)**

**장소 : 강원대학교 미래관 807호 / 온라인 ZOOM 병행**

\* **오프라인 참석은 장소가 협소하여 희망자 중 일부만 참석 가능**

2023년  
한국  
교육  
재정  
경제  
학회

# Schedule

## 콜로키엄 일정

일자	주제	세부내용
3월 13일	교육재정의 분류와 구조	- 교육재정의 개념 / 교육재정의 구조와 유형 구분 - 교육재정의 탐구영역 등
3월 27일	교육재정 확보제도	- 교육재정 확보제도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교육세 등
4월 10일	교육재정 확보제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천과정
4월 24일	교육재정 배분제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천과정
5월 08일	교육재정 지출제도 교육재정 평가제도	- 기금제도, 학교회계제도, 교비회계제도 - 교육재정 성과 평가제도 / 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 - 교육재정 정보공시 / 교육재정투자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5월 22일	교육재정의 특수성	-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관계와 향후 전망
6월 12일	교육재정 이슈 탐색	-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고찰



5월 22일은 한국교육개발원, 6월 12일은 대구대학교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병행 진행

목 차

- 1. 교육재정의 이해**
- 2. 교육재정 확보제도**
- 3. 교육재정 배분제도**
- 4. 교육재정 지출제도**
- 5. 교육재정 평가제도**

제1장

# 교육 예산 및 기금의 구조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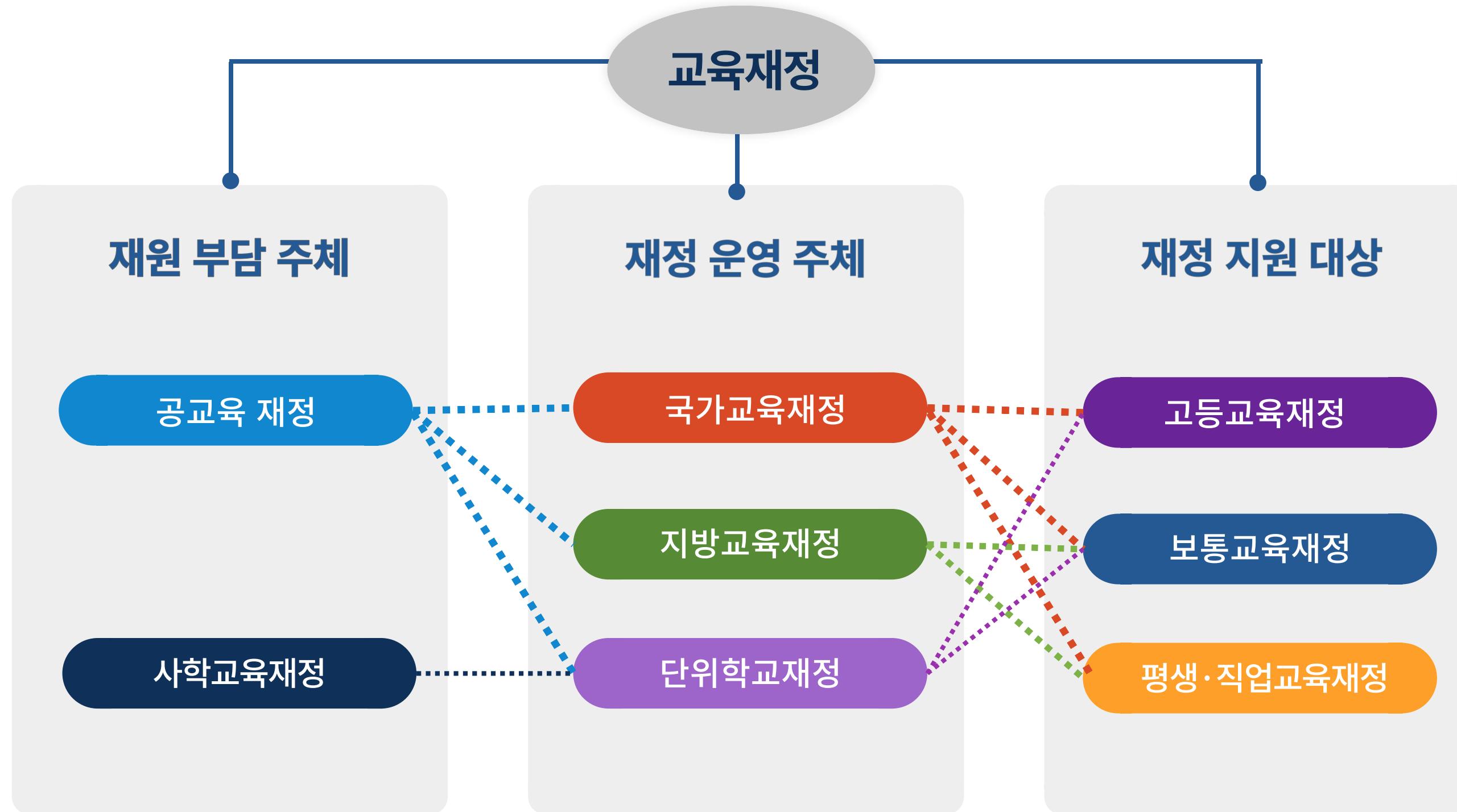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 1. 교육재정의 분류

교육재정의 이해

교육재정은, 1) 교육재원의 부담주체, 2) 재정운영의 주체, 3) 재정지원의 대상 등에 따라서 분류된다.



## 2. 국가재정 체계

교육재정의 이해

- 국가 일반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세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기금의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융자원금회수, 기타로 구분된다

### 일반회계

#### 세입

- 내국세
- 관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 세외수입

#### 세출

- |             |                 |
|-------------|-----------------|
| - 일반/지방행정   | - 보건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농림수산          |
| - 통일/외교     |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 - 국방        | - 교통 및 물류       |
| - 교육        | - 통신            |
| - 문화 및 관광   | - 국토 및 지역개발     |
| - 환경        | - 과학기술          |
| - 사회복지      | - 예비비           |

### 기업특별회계(5개)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 기타특별회계(16개)

- 교도작업
- 지역발전
- 농어촌구조개선
- 등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에너지 및 자원사업
- 우체국보험
- 주안미군기지이전
- 환경개선
- 국방군사시설이전
- 혁신도시건설
- 교통시설
- 유아교육지원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 고등평생교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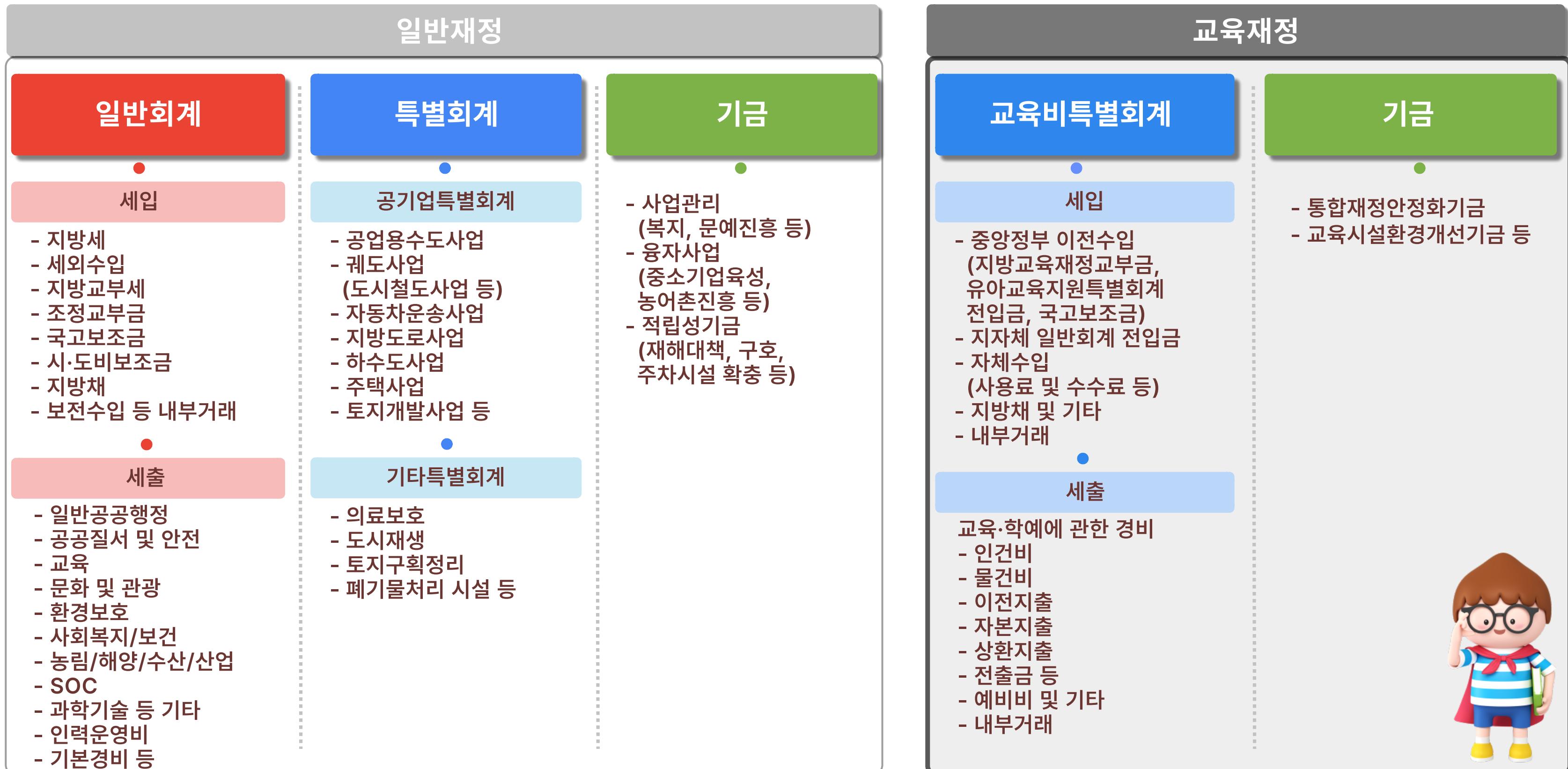
### 기금(68개)

- 사업성기금 49개
- 사회보험성기금 6개
- 금융성기금 8개
- 계정성기금 5개



# 3. 지방재정 체계

교육재정의 이해



# 4. 일반회계제도와 특별회계제도

교육재정의 이해

- 교육재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 및 기금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1951년 9월 제정된  
「재정법」 제12조

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써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한다.

2023년 기준

- 특별회계 21개
- 기타특별회계 16개
- 기업특별회계 5개

1963년 11월 제정된  
「지방재정법」 제28조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교육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일제강점기

학교비는 제2특별경제라는 이름으로 별도 운영

1961년 개정 「교육법」

지방교육비특별회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5. 기금제도

교육재정의 이해



2023년 현재 총 68개 기금

- 사업성기금 49개
- 사회보험성기금 6개
- 계정성기금 5개
- 금융성기금 8개

2021 결산 기준

광역자치단체 267개  
기초자치단체 2,143개  
지방교육자치단체 55개

1961년 말  
「예산회계법」 제89조

제89조(특별기금의 설치)

국가는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 할 수 있다.

1989년 3월 전부  
개정된 「예산회계법」

제7조(기금의 설치)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1991년 말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예산회계법」을 대체하여 제정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제5조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1988년 4월 개정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 1994년 3월 개정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기금의 설치 · 운용’ 규정
- 1995년 7월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기금의 설치 · 운용’ 추가
- 2005년 8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 6. 교육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재정의 이해



## 교육부 예산 이란?

정부가 교육 및 학예를 위한 공공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투자하는 예산

### 교육부 자체 수입 예산

- '23년 2,462억원(총 세출 예산의 0.24%)  
그러나, 세입 자체가 국고로 계상
- 교육부 세출예산('23년 101조 9,979억원)은 전체가 국고에서 충당

### 2023년 교육분야

- 4개 부문(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24개 프로그램, 80개  
단위사업, 221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 특별회계 & 기금 (2023년)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 7. 시·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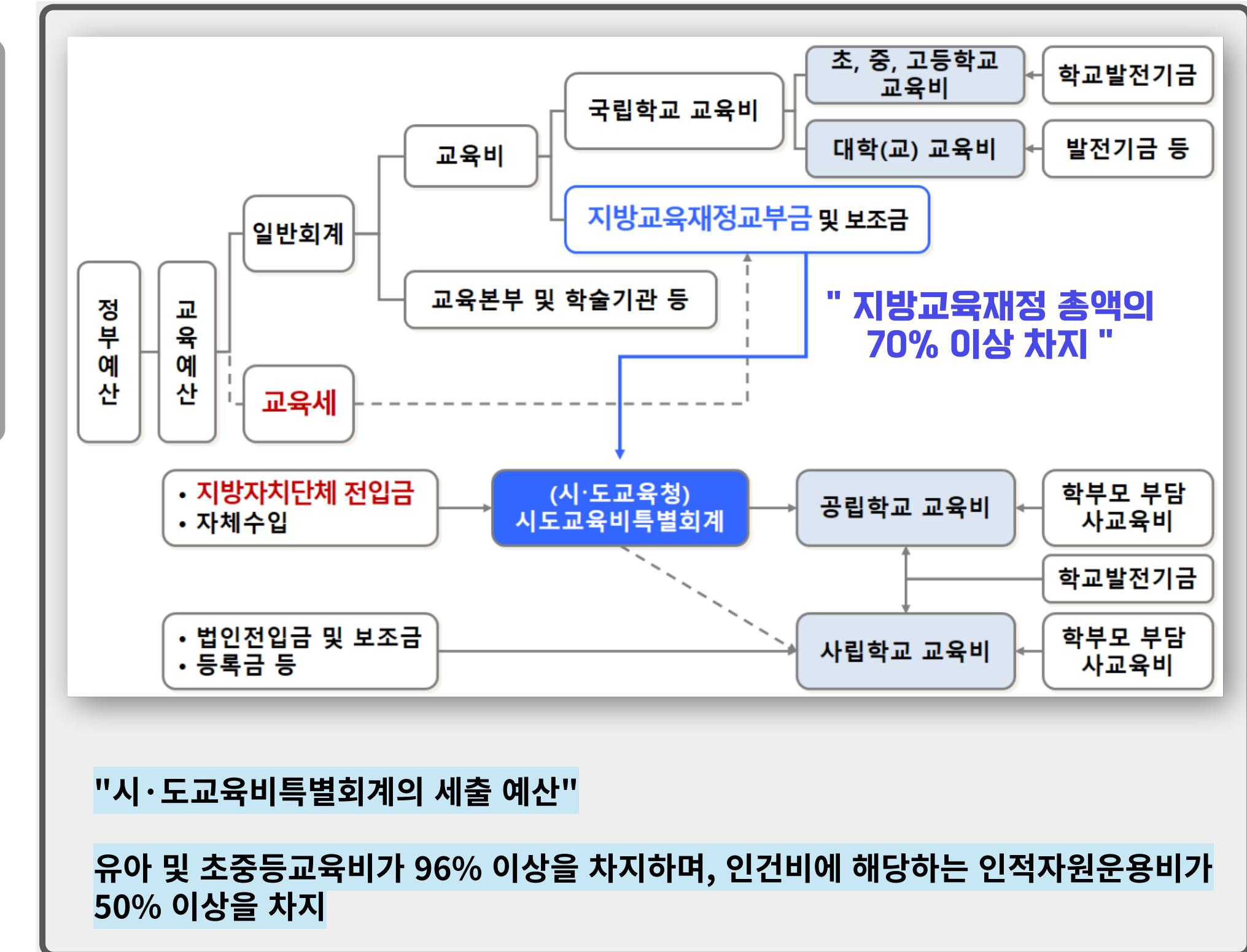
교육재정의 이해



## ■ 17개 시·도교육청

- 8개 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9개 도교육청 : 강원<sup>\*</sup>·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강원도는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 7. 시·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 (2)

교육재정의 이해



## 17개 시도교육청 주요 기금

- 2019년 대구교육청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청들이 '재정안정화기금'(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또는 관련 조례 제정
- 2021년 울산교육청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용 또는 관련 조례 제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2019년부터 조성

#### 목적

-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 내용

-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용도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2021년부터 조성

#### 목적

- 교육감이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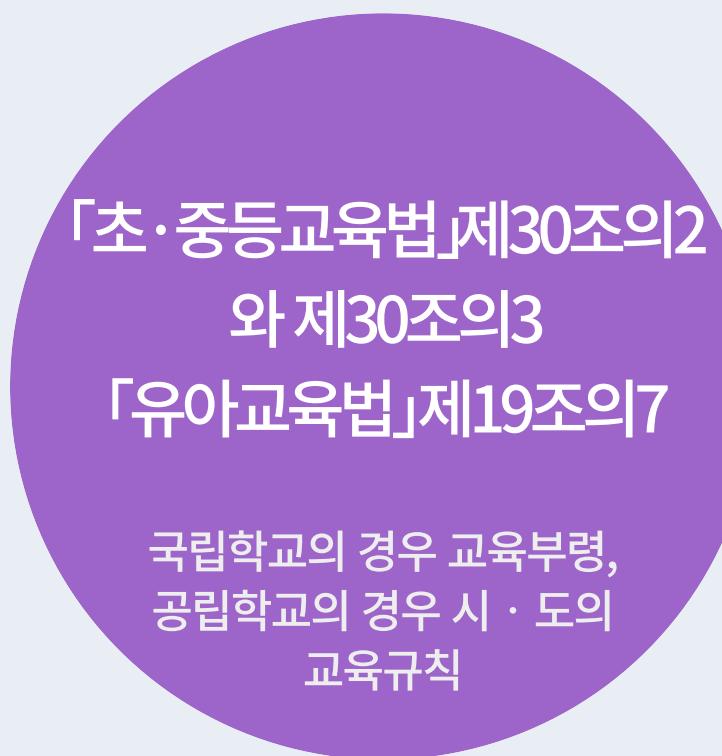
#### 내용

-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
- 기금의 용도는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등

# 8.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

교육재정의 이해

## 학교회계 설치 근거



### 세입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그 밖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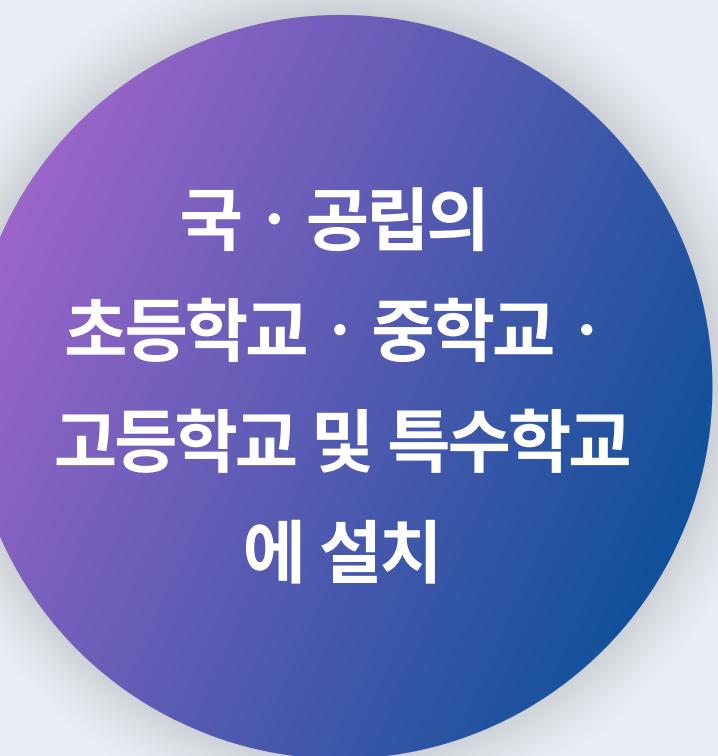
### 세출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

### 회계연도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

## 학교회계제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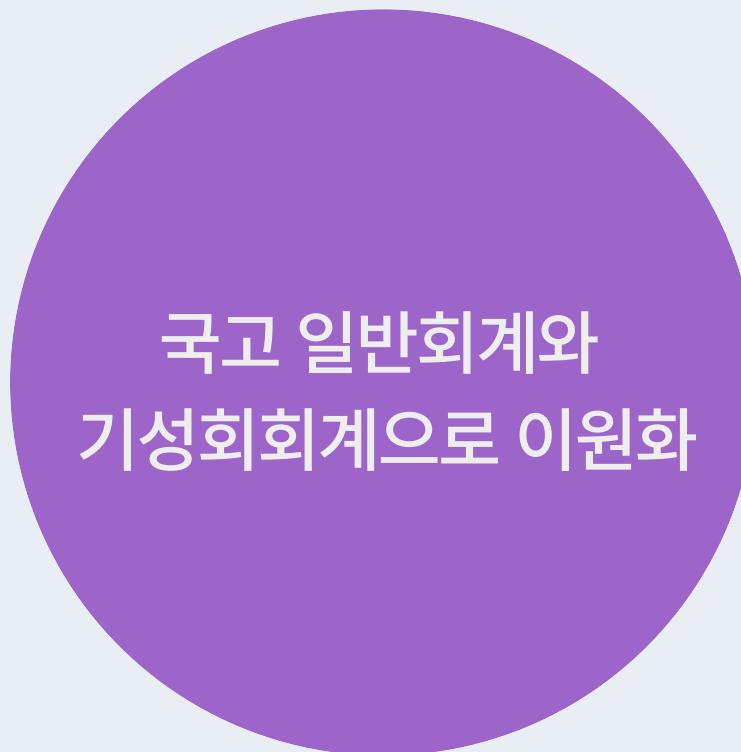
## 학교발전기금

- 국·공·사립 초·중등학교는 학교회계와 별도로 기부금품과 모금금품 등을 재원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용도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 9. 국·공립대학의 대학회계

교육재정의 이해

## 대학회계 도입전



### 배경

-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계기로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 제기
- 2015년 3월 13일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15년 6월 11일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국가지원금 계정

국가 지원금으로 인한 세입 및 그에 따른 세출과 국가지원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는 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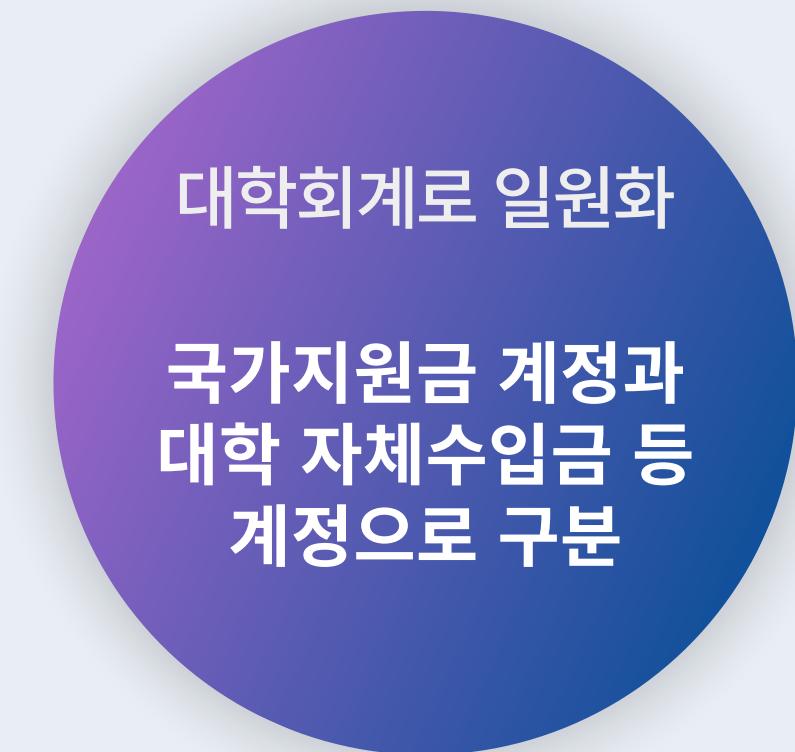
###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수업료 및 그밖의 납입금, 전형료, 이자수입, 자산매각대금, 이월금 등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과 그에 따른 세출을 포함하는 계정

### 대학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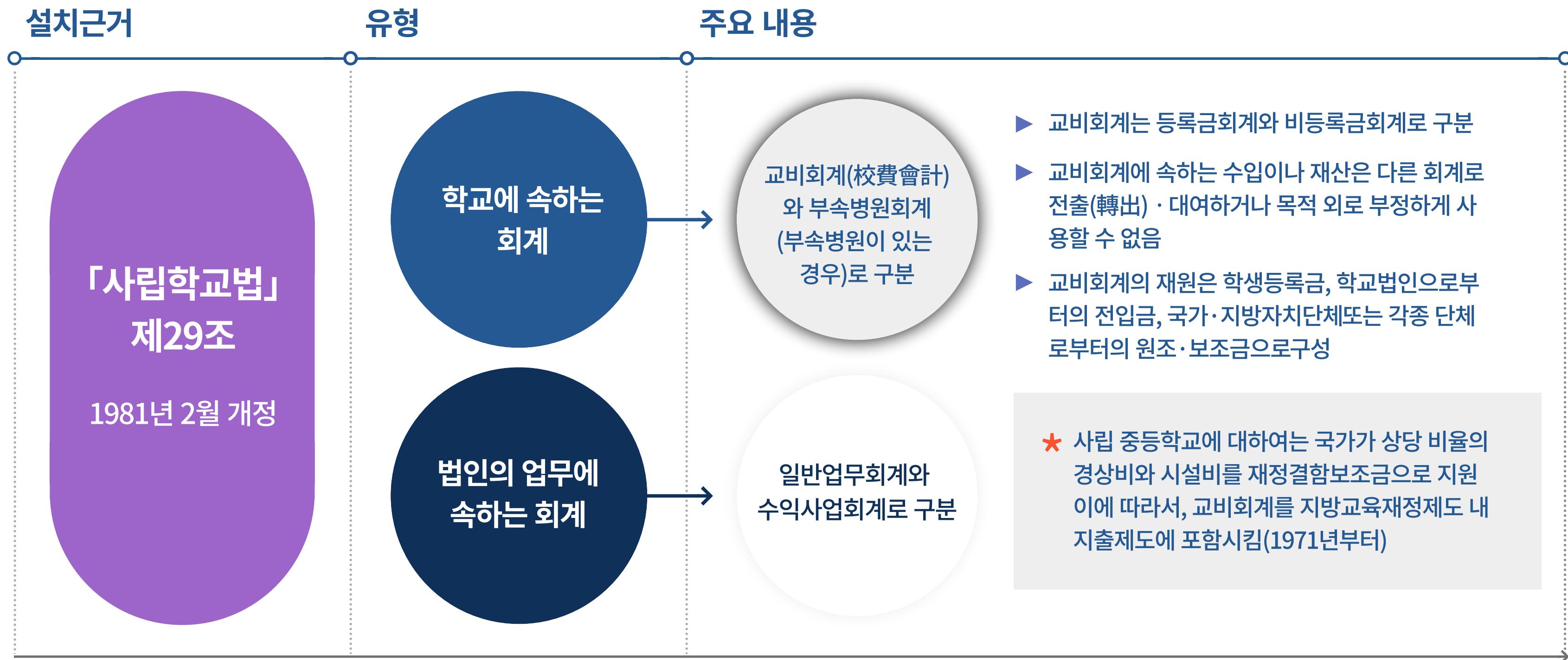
- 국립대학은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으로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지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시설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

## 대학회계 도입후



# 10. 사립 학교의 교비회계

교육재정의 이해



# 11.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

교육재정의 이해

설치근거	주요 내용
<p>「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p> <p>2003년 제정, 2012년 명칭 변경</p>	<p>▶ 종래에 국고회계와 교비회계에 편성되어 운영되던 대학의 연구비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되어 운영</p> <p>수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국·공립대학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등</p> <p>지출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대학의 시설·운영지원비,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국·공립대학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산학협력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기타 산학협력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p>

제2장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영역 및 종류

02

주체로서의 지방교육재정과  
대상으로서의 지방교육재정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 1.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의 이해



교육재정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윤정일·송기창·김병주·나민주, 2015: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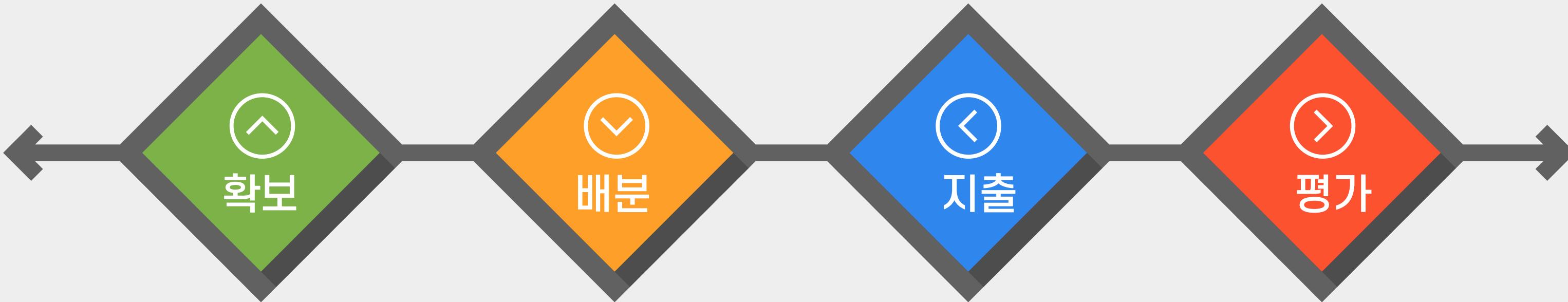
지방교육  
재정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활동 주체가 되어 교육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활동
- 지원 대상으로서의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 보통교육재정(유아교육재정, 초등교육재정, 중등교육재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협의의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할 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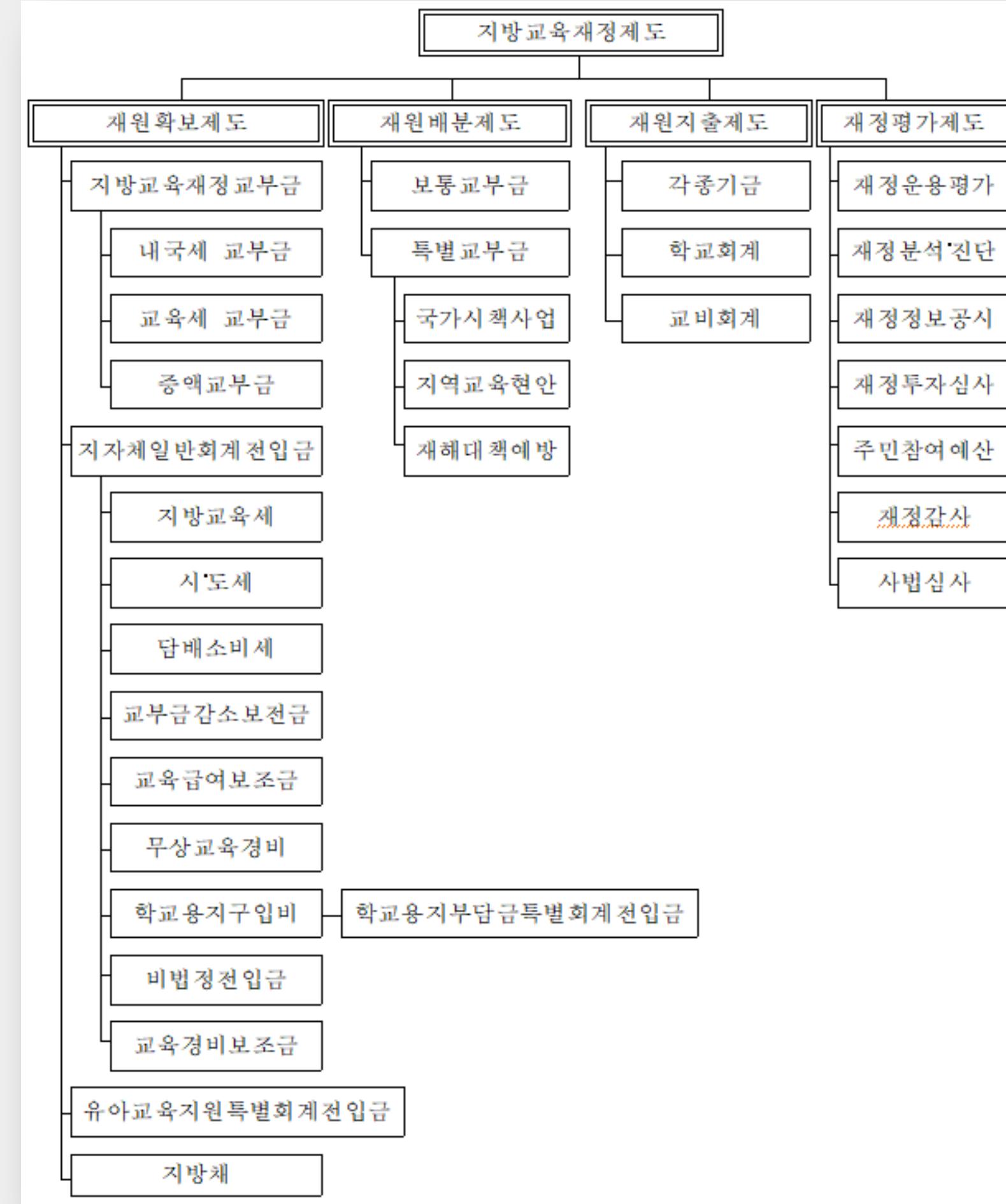
## 2.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주요 영역

교육재정의 이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제도
- 각종 특별회계제도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
- 교육경비보조금제도
- 지방채제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제도와  
특별교부금제도
- 기금제도
- 학교회계제도
- 교비회계제도
- 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제도
- 교육재정분석·진단제도
- 교육재정 정보공시제
- 교육재정투자심사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재정감사제도
- 사법심사제도 등

# 지방교육재정제도 영역과 종류



### 3. 교육비 관련 회계 구조

교육재정의 이해

#### 국가 예산 및 기금

##### 교육부소관 일반회계

교육부 본부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교육부 관련 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교육부 소관 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자체 일반회계 이전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 시·도교육청 소관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타

#### 국·공립학교 예산 및 기금

##### 국·공립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회계

대학발전기금

산학협력단회계

#####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학회계

학교발전기금

#### 사립학교 예산 및 기금

##### 사립학교 회계

교비회계

학교발전기금

산학협력단회계(대학)

##### 학교법인 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 제3장

## 교육재정 확보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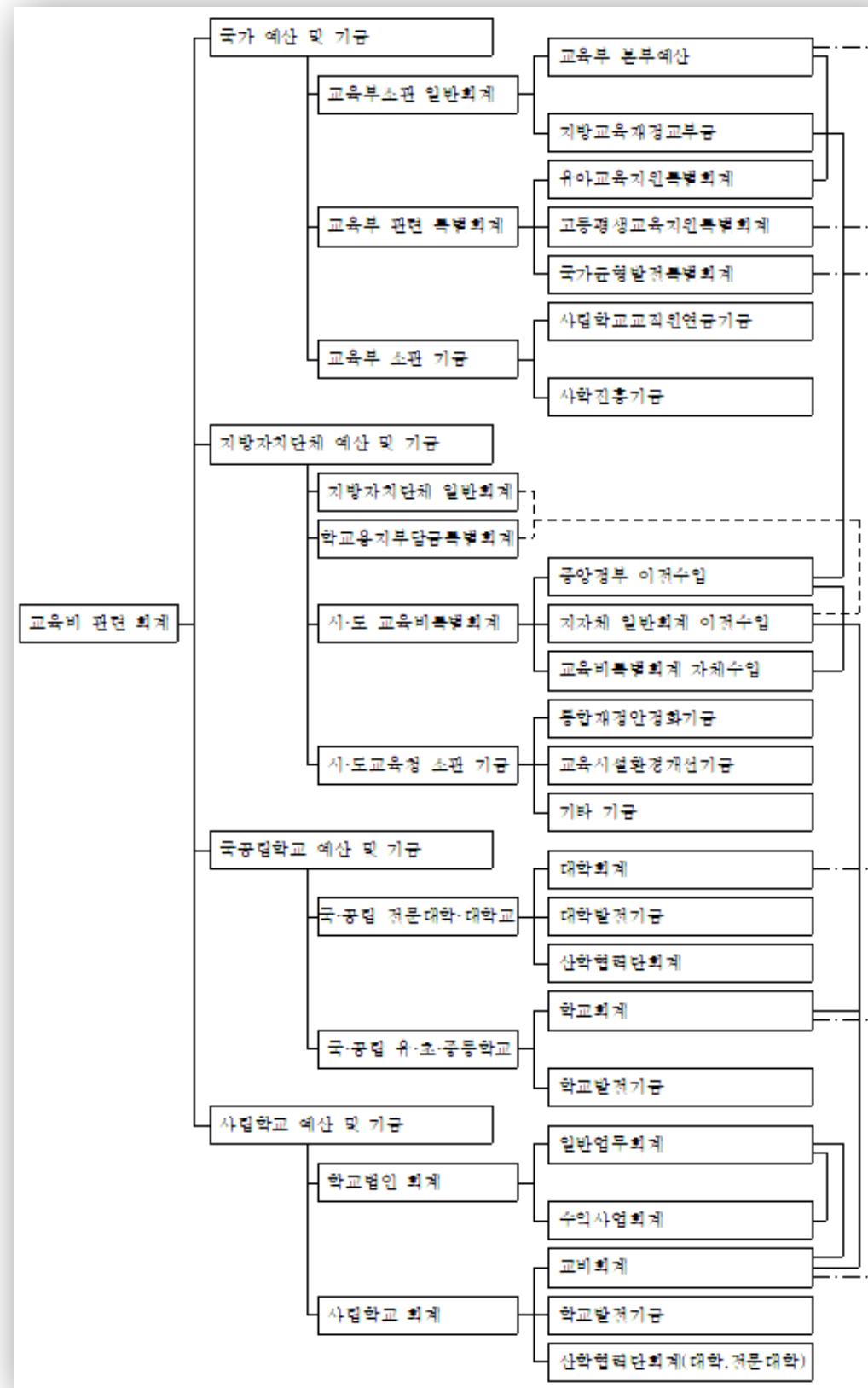
03

고등교육재정의 재원규모는 매년 예산 협상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나, 보통교육재정의 재원규모는 엄격히 법령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

공교육재정에서 국가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단위학교재정을, 그리고 사학교육재정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소개한다.

# 1.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 : 교육재원 확보 근거 법령



## 보통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세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등

## 사학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법령

「사립학교법」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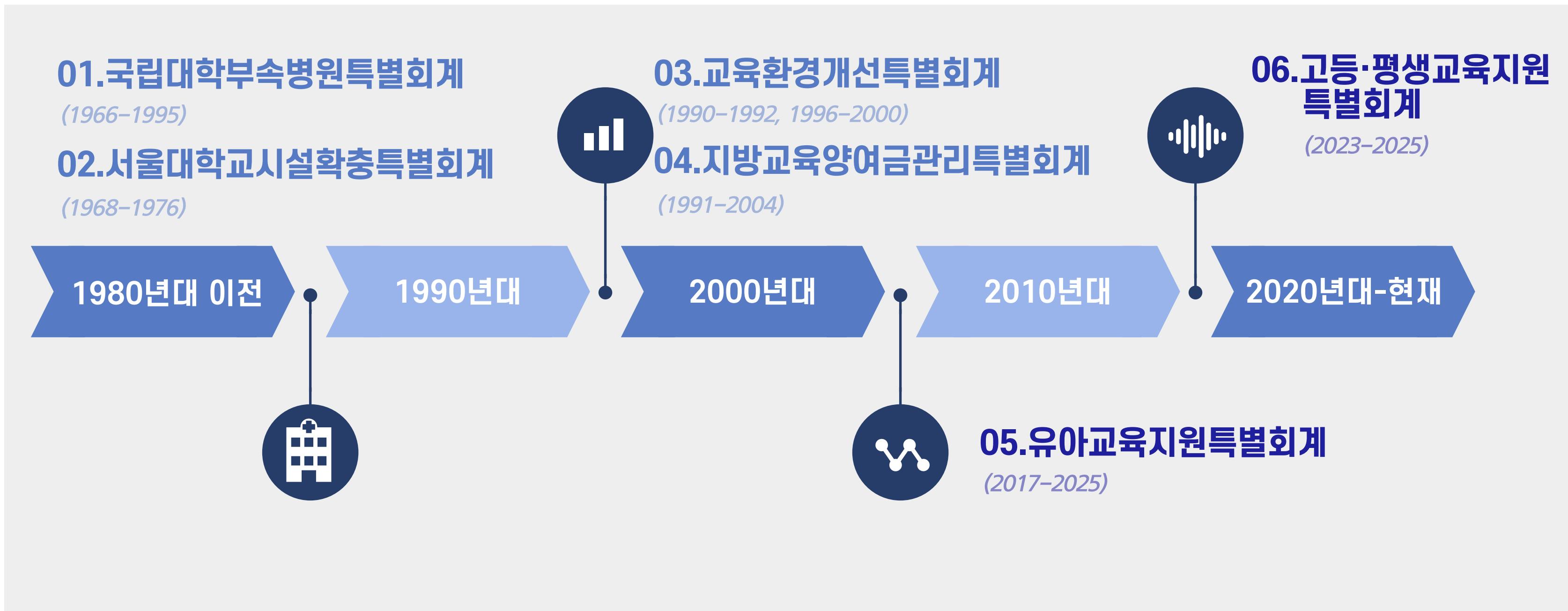
## 2.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 : 특별회계(1)

교육재정 확보제도



### 교육관련 특별회계의 변천

교육부가 관掌한 특별회계 6개/ 그 외에 교육 관련 사업비가 편성된 특별회계 8개



## 2.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 : 특별회계(2)

교육재정 확보제도

### 교육 관련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교육부가 관掌한 특별회계 6개/ 그 외에 교육 관련 사업비가 편성된 특별회계 8개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2차례(1990-1992, 1996-2000) 설치

- ▶ 1차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법률 제4140호, 1989.12.21. 제정)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매년 3,700억원씩 총 1조 1,100억원을 교육환경개선에 투자
- ▶ 2차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법」(법률 제5071호, 1995.12.29. 제정 공포)에 의한 2차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5년간 매년 7,000억원(1996년은 1995년 투자분 3,000억원을 제외한 4,000억원)씩 총 3조 5,000억원 투자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률 제14395호, 2016.12.20., 제정

- ▶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말까지 두 차례 연장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2호, 2022. 12. 31., 제정]

- ▶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 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3년 한시로 설치

# 3.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 : 기금

교육재정 확보제도

## 교육 관련 기금의 주요 내용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국가장학기금 등 세 가지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2001.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개칭)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관리해오던 연금 자산을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법제화하면서 설치
- ▶ 사립학교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단기급여와 교직원의 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기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사학진흥기금

「사학진흥재단법」 제정(법률 제4103호,  
1989. 3. 31.)

- ▶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설치된 기금으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 ▶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채권 발행,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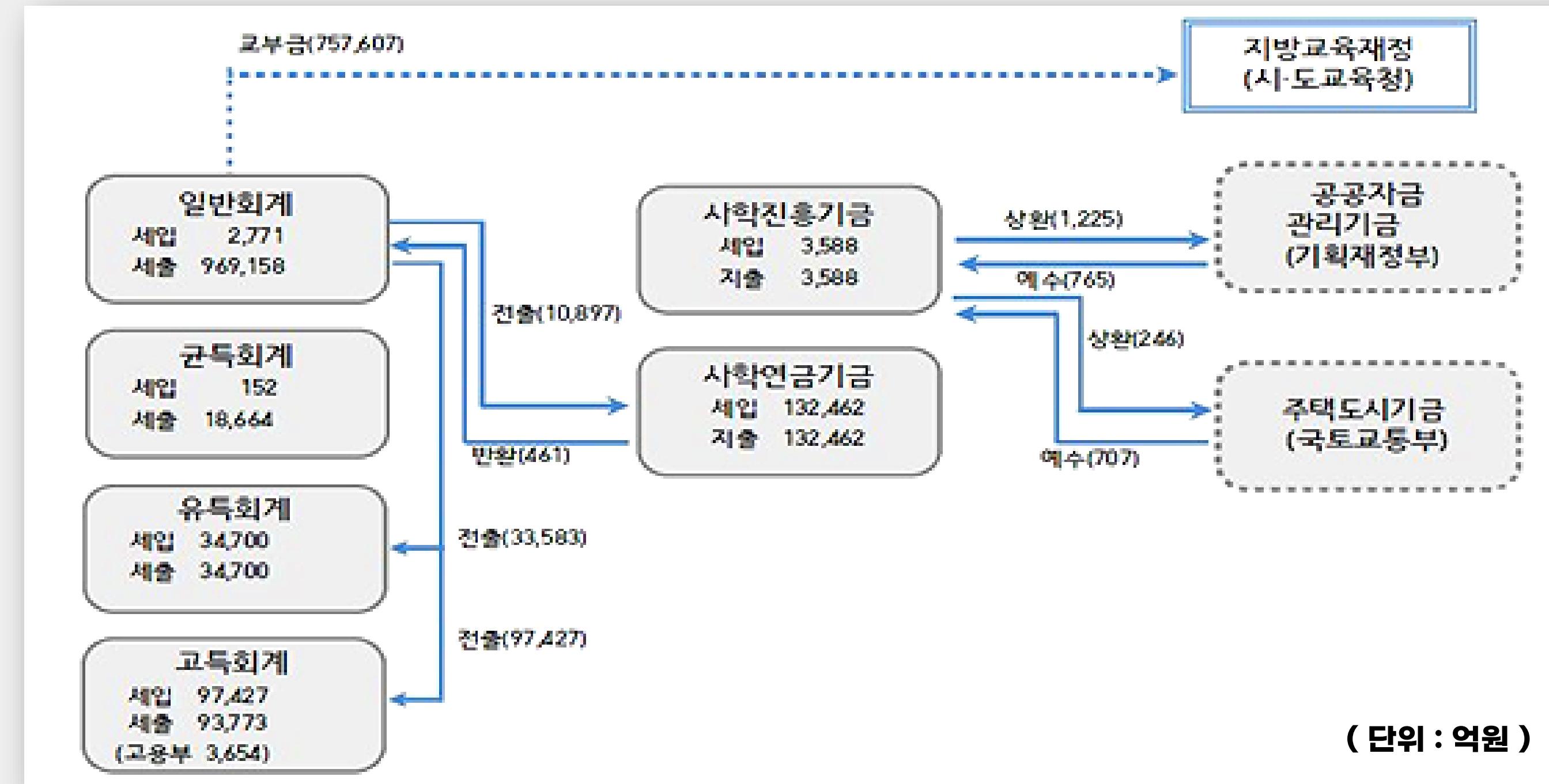
### 한국장학기금

「한국장학회법」 제정(법률 제4104호,  
1989.3.31.)

- ▶ 한국장학회에 설치된 기금이었으나, 국가장학기금으로 바뀌었다가 2010년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0414호, 2010.12.27.)에 의해 국가장학기금은 폐지되었고, 2023년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계정, 학자금대출계정, 장학금지원계정으로 남아 있음



# < 2023년 교육부 소관 재정흐름도 >



(교육부, 2023)

# 4.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1)

## 1 내국세 일정률을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의무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지방교육교부세제도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로 통합(1972)	내국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외부요인에 따른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1959년	1964년	1972 - 1999년	2001-2007년	2008년 이후

의무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1959년)

- ▶ 1971년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 1972년 8.3조치로 교부율의 효력 정지
- ▶ 1982년 교육세 신설로 보통교부금의 교부율 11.8% 회복
- ▶ 1991년 중등교원 봉급교부금 폐지. 증액교부금제도 도입

지방교육교부세제도 도입 (196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로 통합(1972) (1972 - 1999년)

- ▶ 2001년부터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0%로 상향조정
- ▶ 2005년부터 의무교육기관 교원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 폐지/ 내국세 법정교부율이 19.4%로 조정

내국세 법정교부율 상향 조정 (2001-2007년)

외부요인에 따른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2008년 이후)

- ▶ 유아교육지원사업, 방과후학교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교부금사업으로 이양 (2008년 20%로 인상)
- ▶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감소분 조정 (20.27%)
- ▶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보통교부금재원(교육세) 조정
- ▶ 2017년 말 특별교부금 4%에서 3%로 하향조정
- ▶ 2018년말 지방소비세 확충에 따라서 20.46%로 내국세교부율 조정
- ▶ 2019년말 고교 무상교육 비용충당을 위해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지방소비세 추가 확충에 따라 20.79%로 내국세교부율 조정

# 5. 국가교육재원 확보제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2)

## 2 교육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1차 교육세 신설	2차 교육세 신설	영구세 전환 및 확충	지방교육세 분리	교육세 일부 특별회계 전출
1958년	1981년	1990년 말	2000년 말	2017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8년 8월 28일(법률 제496호) 제정, 1961년 폐지</li> <li>▶ 호별세 부가금, 특별부과금 등 지방세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교육비 조달방법을 탈피하여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의무 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과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1년 12월 5일(법률 제3459호) 제정</li> <li>▶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1982년부터 198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1991년까지 1차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0년말 개정에서 적용시한을 폐지하는 동시에 교육세 과세 대상 확대</li> <li>▶ 교육세 일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이원화</li> <li>▶ 2001년부터 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2017~)</li> <li>▶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2023~)</li> </ul>

# 6. 지방교육재원 확보제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 ①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

봉급전입금제도는 1964년부터 도입(서울시와 부산시)  
2001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와 경기도에 대하여 공립 중등교원 봉급의 10%를 부담  
하도록 확대/ 2005년부터 시·도세 전입금에 통합됨으로써 폐지

## ② 담배소비세 전입금

1988년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 제4047호)에 의해 1989년부터 도입  
1994년 보통세였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분리하여 목적세인 교통세로 전환하면서 결손이  
발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입비율을 30%에서 45%로 조정. 현재까지 유지

## ③ 시·도세전입금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교육재원 GNP 5%'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입  
2005년부터는 공립중등교원 봉급전입금과 통합되어 서울시는 10%,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5%로 비율이 조정되었고, 나머지 도는 종전과 같이 3.6% 유지

## ④ 지방교육세 전입금

지방세원에 부가되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교육세 수입액이 일단 지방자치단  
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된 후 다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됨으로써 지방교육세 전입금제도 신설  
지방교육세전입금은 국가 관할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단순 이전된 교육세 재원에 불과

##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지방세 이전 확대에 따른 내국세 총액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신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시·도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따른 교부금감소  
를 보전하는 전입금 추가

## ⑥ 교육급여보조금 전입금

기초생활보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오던 교육급여사업이 2016년부터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급여에 대한 대응투자분(서울 50%, 지방 20%)을 이전한 재원

## ⑦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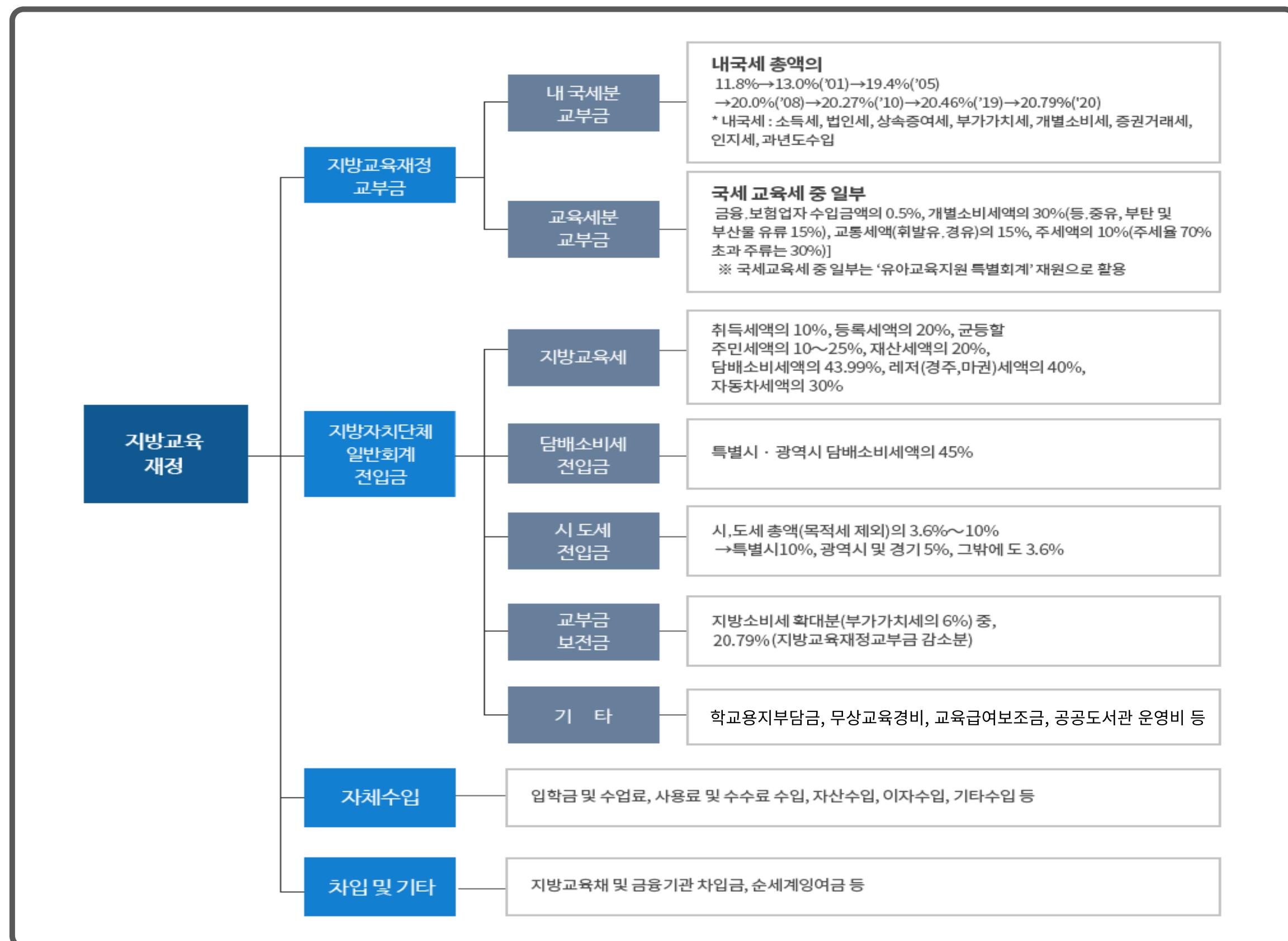
2020년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실제는 2019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었으나, 2019년  
도 무상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 도입된 전입금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

## ⑧ 학교용지구입비 부담 전입금

1995년 제정/ 2017년 3월 21일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604호)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

# <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 >

교육재정 확보제도



## 7. 초·중등학교의 교육재원 확보

교육재정 확보제도



- 2001년 3월 국·공립학교에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단위학교는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 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교예산을 편성·집행
- 단위학교가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외에 사친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를 거쳐 정착된 학부모자율협찬금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 기부금, 교육경비보조금 등이 있음
-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법률 제5064호, 1995.12.29.)하는 과정에서 시·군 및 자치구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1조 제5항) 신설

↳ 교육경비보조금

## 8. 대학의 교육재원 확보

교육재정 확보제도



### 2014년까지 국립대학은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구분하여 운영

2010년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2015년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7호, 2015.3.13.)을 제정하여 **국립대학별로 대학회계 설치**



### 1988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으로 사립대학 등록금 자율 책정 시작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는 대학별 소요교육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권장



2010년 1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을 통해 등록금 수준 안정화 장치 마련  
2011년 9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를 개선하여 학생위원 비중 확대



# 9. 사립학교의 교육재원 확보

교육재정 확보제도

## 학교법인의 법인전입금

학교법인 전입금제도의 변화는 수익용 기본재산제도의 변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

- ▶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이 법인을 운영하고 법정부 담금을 포함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
- ▶ 법령 제·개정을 통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는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
- ▶ 재산에서 얼마의 수익금이 생기든 기준에 따라 수익금의 80%를 전출하면 그만이므로 법인전입금제도는 사립학교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사립중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 ▶ 중학교 무시험진학, 학군별 학생 추첨배정, 교원봉급 평준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사립간의 등록금을 동일 수준으로 징수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의 지원이 불가피하여 1971년부터 사립중학교에 대한 국고보조 시작
- ▶ 1977년부터 공립학교 기준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 즉 재정결함분을 보조하기 시작
- ▶ 1990년~1992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지원되었고, 이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형태로 시설비가 계속 지원
- ▶ 2002년부터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사립 중학교가 재정결함보조를 받게 되었음



제4장

## 교육재정 배분제도

04

국가교육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별도의 배분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통교부금제도와 특별교부금제도가 그것이다.

---

보통교부금제도와 특별교부금제도

# 1. 보통교부금제도 (1)

교육재정 배분제도

## 1 보통교부금의 배분 기준

의무교육경비, 기타 경비	1991년부터 지방교육 자치제 실시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 구분	사업재정수요액 구분	합리적 교부기준 제도적 장치 완성
1971년 말	1991년	1996-200년	2001년부터	2004년 말 이후
의무교육경비 전액과 기타 경비 중 공립 교원봉급 반액(서울 제외)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교부  나머지 기타 경비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규칙」(교육부령 제590호, 1990. 12. 31., 제정)  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에 따라 산출한 가중학생수를 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총액으로 교부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을 합한 금액  경상재정수요액은 학교급별 교육비 차이도를 반영한 가중 학생수에 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  학생수용시설재정수요액은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완화 및 2부제 수업 해소 등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기준재정수요액은 경상재정수요액과 사업재정수요액으로 구분  경상재정수요액은 인건비·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로 구분하여 소요액을 산정  사업재정수요액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신·증축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정보화사업비, 교육과정 개편 관련 사업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35호, 2004. 12. 31.)을 신규 제정  2005년부터 경상재정수요액과 사업재정수요액의 구분을 폐지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따라 통합적으로 산정  2008년부터 자체노력 수요가 신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과 소항목에서 세분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일부 항목이 통폐합되어 다소 감소

# 1. 보통교부금제도 (2)

교육재정 배분제도

## 2 기준재정수입액

제정된 교부금법 제7조	개정되었으나, 실제적인 차이는 없음	학생수용시설재정 수요액 구분	시행령 신규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5조
1971년 말 제정	1982년 4월 개정	1995년 말 개정	2004년 말	현행
"기준재정수입액은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은 이를 수입예상액에 포함한다. 국고에서 교원봉급으로 교부되는 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의 수입예상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 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학예에 관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예상액의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996년부터 교육부령에 기준재정수입액 상세 규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이동  2005년부터 기준재정수입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2006년말 교부금법을 개정하여 2007년부터 이를 100%로 환원하였고, 지방세 재원의 수입 중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다음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입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출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학교용지부담금,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 고교무상교육 전입금)의 산정기준은 따로 정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또는 징수전망 등을 기초로 한 세수의 변동요인이 있는 때에는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

## 2. 특별교부금제도 (1)

교육재정 배분제도

### 1 특별교부금의 재원 규모

교부금법 제정시	미규정	교부금의 일정 비율	교부금의 일정 비율	비율 인하
1971년 말	1982.4.3. 개정	1990.12.31. 개정	2004.12.30. 개정	2017.12.30. 개정
'보통교부금(내국세 총액의 11.8%)의 10%(내국세 총액의 1.18%)'로 규정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내국세 교부금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내국세 교부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내국세 교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내국세 교부금의 규모 변화

1972년부터 2000년까지 내국세 총액의 **11.8%**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3%**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9.4%**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0%**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27%**  
2019년 **20.46%**  
202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20.79%**

## 2. 특별교부금제도 (2)

교육재정 배분제도

### 2 특별교부금의 용도

3가지로 규정

1972-2004년

-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②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③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4가지로 확대

2001.4.17.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서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새로 규정
-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국가적 장려 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정책사업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금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②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결손의 보전에 필요한 특별한 재정수요(재정보전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금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재해대책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④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의 신축·복구·확장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현안사업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 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우수교육청 인센티브) 등 3가지로 규정

2004.12.30. 개정

- ①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②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되, 재해대책수요 금액의 사용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7.12.30. 개정

- 2017년 12월 30일 개정에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재해대책수요에서 국가시책사업수요로 바꾸었으며, 재해대책수요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 추가

제5장

## 교육재정 지출제도

05

지방교육재정의 주체인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입장에서 본다면, 기금제도, 학교회계제도, 교비회  
계제도 등은 교육재원 지출제도라고 볼 수 있다.

---

기금제도, 학교회계제도, 교비회계제도

# 1. 기금제도 (1)

교육재정 지출제도

## 1 국가 기금제도의 변천과정

「재정법」 1951년 9월 제정	「예산회계법」 제정 제89조 1961년 말	「예산회계법」 전부개정 제7조 1989년 3월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1991년 말	「국가재정법」 제정 제5조 2006년 10월
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재정법 대체 법안 제89조(특별기금의 설치)에 “국가는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에는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기금은 세입세 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 용할 수 있다.”고 규정	제7조에 ‘기금의 설치’ 규정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기금의 설치 요건을 좀더 구체화	국가는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본 법」을 제정	「예산회계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국 가재정법」은 기금의 설치 요건을 보다 구 체화  제5조에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 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 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기금은 세입세 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 다.”고 규정

# 1. 기금제도 (2)

교육재정 지출제도

## 2 지방자치단체 기금제도의 변천과정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1988년 4월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35조

1994년 3월 개정

개정 「지방자치법」은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기금  
의 설치 · 운용'을 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1995년 7월 개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 제13조 '교육위원회  
의 의결사항'에 '기금의 설  
치 · 운용' 추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본법」 제정

2005년 8월 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  
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

# 1. 기금제도 (3)

교육재정 지출제도

##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기금제도 변천과정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  
임차 지원사업기금

1994년 7월 11일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설치한 기금은 전남교육청이 1994년 7월 11일 설치한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사업기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1998년 1월 12일

두번째로 설치된 것으로, 경북 교육청이 설치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

이승복 장학기금

2004년 4월 7일

이승복 장학기금은 1986년 제정된 「이승복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급하던 이승복 장학금을 기금으로 전환한 것

감채기금

충남은 '지방채상환기금'

2006년

제주 · 경북 · 강원 · 경남 · 대구 · 대전 · 인천 · 전북 · 충남교육청이 '감채기금'(충남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07년

강원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설치

재정안정화기금(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년

2019년에는 대구교육청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청들이 '재정안정화기금'(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 운용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1년

2021년에는 울산교육청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 · 운용 또는 관련 조례 제정

- ▶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설치한 기금은 전남교육청이 1994년 7월 11일 설치한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사업기금'이었다.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모든 교육청들이 공통적으로 설치 · 운용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금이며, 이외에 교육청마다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특한 기금들을 설치 · 운용하고 있다.

## 2. 학교회계제도

교육재정 지출제도

### 개념 학교회계제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와 제30조의3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되며,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 대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고 있다.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단위학교의 우선순위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종전에는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 재원을  
구분하여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  
해오던 학교예산

### 3. 교비회계제도

교육재정 지출제도

#### 사립학교 교비회계의 변천과정

「사립학교법」 제정  
제6조제4항

1963년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예산의 구분)에 "학교법인의 예산은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예산과 기타의 업무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

「사학기관재무 · 회계 규칙」 제정

1966년 3월

교비회계 명칭은 없었지만, 학교법인 내에 학교예산과 법인업무예산을 엄격 구분한 것으로 보이며, 학교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분리

「사립학교법」 개정

1981년 2월 이후

제29조 명칭이 '회계의 구분'으로 바뀌고, 현재와 같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의 명칭 정착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 · 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여러 번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자문 및 심의기관의 명칭이 바뀌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도록 하였지만,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법인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회계의 구분은 계속 유지

사립 초 · 중등학교의  
교비회계

2001년 이후

2001년 국 · 공립학교에 학교회계가 설치되고 2008년 지방교육행 · 재정통합 시스템(에듀파인)이 구축되고 2009년 에듀파인 내에 학교회계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시범 적용하다가 2010년부터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적용하면서 교비회계도 학교회계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학교회계와 교비회계가 동일한 회계시스템을 사용

교비회계를 지방교육재정제도 내 지출제도에 포함시킨 것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사립학교 교비회계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함

제6장

# 교육재정 평가제도

06

교육재정 평가제도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진단 · 분석 및 성과평가, 재정정보공시, 투자심사, 감사 등 재정통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통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은 주민통제를 포괄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재정통제, 사법적 통제, 주민통제

# 1. 재정운용 성과평가제도

교육재정 평가제도

## 1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시 · 도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매년 평가  
('01~'05년의 경우 격년제 실시) 실시

## 2 2008년

시 · 도교육청 평가와 분리하여 지방교육  
재정운영평가 별도 실시

## 3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 · 도교육청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실시

## 4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평가를 시 · 도교육청 평가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재정운영 성과평가 실시

## 5 2017년, 2018년 이후

2017년 분석과 평가 시기 일치, 통합 구성  
2018년부터 '지방교육재정 분석 · 진단'으로 일원화

### 재정영역이 차지하는 점수의 비중

1996년 평가 첫해 10.0%에서 **1998년 26.0%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2006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제도가 시행  
되면서 다시 16.7%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이후 2014년  
까지 3~5% 수준 유지**

2012년부터 도입된 누리과정의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의 갈등 속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강제 목적으로 도입

## 2. 지방교육재정 분석 · 진단제도

교육재정 평가제도

### 1 「지방재정법」 1988년 4월 6일 전부개정

시·도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교부장관은 재정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2 199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진단 규정 추가

### 3 2005년 8월 전부개정 「지방재정법」

‘재정분석 및 공개’에 관한 장(제55조~제57조)을 별도로 분리

2010년 7월부터 10월 실시

교육부가 처음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분석 및 진단 실시

2010년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지방채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특히 재정 건전화·효율화 노력 절실  
2010년부터 학교회계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 현황의 분석 기반이 갖춰진 상태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근거

1998년부터 매년 시행

### 3. 지방교육재정 분석 · 진단제도

교육재정 평가제도

#### 1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체분석 및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분석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분석을 실시한 후, 시 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별 데이터 검증, 서면분석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담당자 면담 등 현지실사를 실시

#### 2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의 도입으로 인해 재정분석은 분석위원들의 현지실사 과정이 생략되고 각 지표별 자료를 수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도교육청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변경

#### 3 2018년부터

지방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지표를 흡수하여 성과평가기능을 강화한 재정분석 · 진단 실시



## 4.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제도

교육재정 평가제도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

시 ·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와  
교육부의 통합공시로 구분하여 추진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  
산 제도의 실효성 제고, 지역통합재정 통계의 작성과 더불어  
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통합공시 근거를  
신설

추가된 항목 중 중요한 항목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지방  
보조금 관련 현황 등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개정하여 공시 횟수를 기존 회계연  
도마다 한번 이상에서 예산 및 결산서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최소 2회 이상  
공시하도록 변경

지방교육재정 정보공시란?

시 · 도교육청이 재정운용 상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68조부터 제72조에 근거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http://eduinfo.go.kr))  
2015년 12월 17일부터 정식 구축 · 운영

# 5.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재정 평가제도

## ① 2005년 8월 4일 개정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조항 신설  
강제조항은 아니었음

## ② 2011년 3월 8일 개정 「지방재정법」

강행 규정으로 변경  
시 · 도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③ 시도교육청의 조례 제정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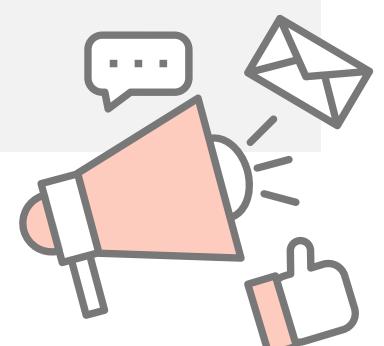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9월 1일 가장 먼저 조례 제정  
2014년 10월 31일에 충북교육청이 마지막으로 조례 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별, 직능단체별 대표성을 고려한 민간 위원으로 구성

위원수는 15~50명까지 매우 다양

위원의 역할은 의견제시, 자문 등에 제한적으로 부여, 주민의 예산심의 안건도 교육사업 등에 제한



# 6.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제도

교육재정 평가제도

## 1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함

## 2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함

## 3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투자심사의 종류** : 시 ·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자체심사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중앙의뢰심사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지방의회 구성 이후 방만한 재정 낭비를 우려하여 민선단체장 선거 실시 이전인 1992년부터 도입

교육분야에서는 2001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 · 융자사업 심사규칙」이 제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 제도 도입

# Q & A



Education Finance Research Institute



교육재정중점연구소